

#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가. 제1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7호(2. 3.)에 따른

- 제1회: 7급/수의 50명(전라남도 18, 시·군 32)

나.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6. 10.(토)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28개	1,175명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호	간 호	38	전라남도 1, 목포 4, 나주 5, 광양 2, 구례 1, 화순 3, 강진 1, 해남 3, 영암 4, 무안 4, 영광 3, 장성 1, 진도 6	
		보건진료	보건진료	19	여수 1, 순천 3, 나주 2, 광양 2, 담양 1, 고흥 2, 보성 1, 강진 1, 해남 2, 함평 1, 장성 1, 진도 2	
	9급	행정	일반행정		353	전라남도 4, 목포 34, 여수 18, 순천 24, 나주 25, 광양 11, 담양 2, 곡성 14, 구례 9, 고흥 19, 보성 10, 화순 12, 장흥 8, 강진 6, 해남 35, 영암 26, 무안 7, 함평 7, 영광 19, 장성 11, 완도 12, 진도 6, 목포의회 2, 순천의회 11, 나주의회 3, 곡성의회 2, 구례의회 2, 고흥의회 3, 보성의회 2, 해남의회 1, 영암의회 2, 무안의회 2, 장성의회 3, 진도의회 1
			일반행정(저소득)		28	도 일괄 28 (전라남도 2, 목포 2, 여수 1, 순천 2, 나주 2, 광양 1, 담양 1, 곡성 2, 구례 1, 고흥 1, 화순 1, 장흥 2, 해남 2, 영암 1, 무안 1, 함평 1, 영광 1, 장성 1, 완도 1, 진도 2)
			일반행정(장애인)		125	도 일괄 125 (전라남도 8, 목포 2, 여수 5, 순천 3, 나주 5, 광양 2, 담양 6, 곡성 10, 구례 9, 고흥 4, 보성 16, 화순 3, 장흥 8, 강진 2, 해남 8, 영암 7, 함평 6, 영광 3, 장성 12, 완도 3, 진도 1, 신안 2)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세무	지방세	25	목포 5, 여수 4, 순천 2, 나주 2, 고흥 1, 장흥 2, 강진 1, 해남 3, 영암 2, 무안 1, 장성 1, 완도 1
			지방세(장애인)	4	도 일괄 4 (나주 1, 담양 1, 신안 2)
	사회복지	사회복지	68	목포 4, 여수 15, 순천 3, 나주 6, 광양 3, 구례 2, 고흥 5, 화순 2, 해남 9, 영암 2, 무안 3, 함평 1, 영광 2, 장성 4, 완도 4, 진도 3	
		사회복지(저소득)	5	도 일괄 5 (목포 2, 여수 1, 나주 1, 광양 1)	
		사회복지(장애인)	29	도 일괄 29 (전라남도 1, 목포 9, 여수 3, 순천 2, 나주 2, 광양 1, 담양 1, 곡성 2, 고흥 1, 함평 1, 영광 2, 장성 2, 신안 2)	
	전산	전 산	20	도 일괄 20 (전라남도 1, 목포 4, 여수 3, 순천 1, 광양 2, 구례 2, 강진 1, 해남 1, 영암 2, 장성 1, 진도 2)	
		전 산(장애인)	5	도 일괄 5 (전라남도 1, 진도 2, 신안 2)	
	사서	사 서	9	전라남도 1, 여수 2, 광양 2, 곡성 1, 영암 2, 영광 1	
		사 서(장애인)	3	도 일괄 3 (전라남도 1, 여수 1, 광양 1)	
	속기	속 기	1	영광의회 1	
	공업	일반기계	16	목포 1, 여수 3, 나주 2, 광양 4, 담양 1, 영암 4, 무안 1	
		일반전기	21	도 일괄 21 (순천 3, 나주 3, 광양 5, 담양 1, 곡성 2, 구례 3, 고흥 2, 해남 1, 무안 1)	
		원 자 력	2	영광 2	
		일반화공	8	목포 3, 여수 2, 강진 1, 영암 1, 함평 1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농업	일반농업	46	여수 2, 순천 2, 나주 3, 광양 3, 곡성 1, 고흥 3, 화순 7, 장흥 2, 강진 1, 해남 4, 영암 2, 무안 2, 영광 5, 장성 5, 완도 2, 진도 2
			일반농업 (장애인)	3	도 일괄 3 (광양 1, 구례 1, 영광 1)
			축 산	18	여수 3, 순천 2, 나주 2, 곡성 1, 고흥 2, 화순 3, 해남 1, 무안 2, 영광 2
		녹지	산림자원	17	여수 3, 순천 2, 나주 2, 담양 1, 곡성 3, 고흥 1, 보성 1, 영암 1, 무안 1, 진도 2
			산림보호	1	해남 1
		해양 수산	일반수산	9	목포 1, 여수 4, 강진 1, 해남 1, 진도 2
			일반해양	4	광양 1, 고흥 2, 무안 1
		보건	보 건	31	목포 1, 여수 1, 나주 5, 광양 3, 곡성 3, 강진 1, 해남 3, 영암 5, 영광 3, 진도 6
			보 건 (장애인)	7	도 일괄 7 (광양 1, 구례 1, 무안 1, 영광 1, 진도 1, 신안 2)
		식품 위생	식품위생	8	여수 1, 순천 2, 광양 1, 곡성 1, 고흥 1, 영암 1, 영광 1
		환경	일반환경	26	목포 3, 여수 3, 나주 3, 광양 4, 담양 1, 곡성 2, 고흥 3, 화순 1, 해남 1, 영암 4, 장성 1
		시설	도시계획	13	여수 1, 순천 1, 나주 2, 고흥 2, 강진 1, 해남 1, 영암 1, 장성 3, 진도 1
			일반토목	122	목포 4, 여수 16, 순천 8, 나주 15, 광양 5, 담양 5, 곡성 7, 고흥 9, 보성 4, 화순 11, 장흥 2, 강진 1, 해남 10, 영암 2, 무안 8, 장성 15
			건 축	56	전라남도 2, 목포 5, 여수 3, 순천 7, 나주 3, 담양 3, 곡성 5, 고흥 4, 화순 2, 장흥 4, 강진 1, 해남 5, 영암 4, 무안 4, 장성 3, 진도 1
			지 적	8	여수 1, 나주 2, 장흥 2, 영암 2, 무안 1
			디 자 인	2	담양 1, 구례 1
			방재 안전	방재안전	9
		방송 통신	통신기술	16	도 일괄 16 (전라남도 3, 목포 1, 순천 1, 나주 1, 광양 1, 곡성 2, 고흥 2, 강진 1, 해남 2, 함평 2)

다.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8. 19.(토)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8개	94명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녹지	조 경	2	순천 1, 나주 1	
			해양 수산	선박항해	2	해남 1, 진도 1
				선박기관	1	해남 1
		보건	보 건	15	곡성 3, 구례 3, 해남 3, 무안 1, 함평 5	
		의료 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8	순천 1, 담양 1, 곡성 1, 구례 1, 무안 1, 장성 1, 진도 2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8	목포 1, 나주 1, 곡성 2, 고흥 1, 영암 1, 무안 1, 함평 1	
			의료기술 (방사선사)	6	여수 1, 순천 1, 곡성 1, 해남 1, 영암 1, 진도 1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3	나주 2, 영암 1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3	광양 2, 해남 1	
		환경	수 질 (정수시설)	15	도 일괄 15 (여수 6, 광양 2, 곡성 1, 구례 2, 고흥 2, 해남 1, 영광 1)	
			대 기	1	곡성 1	
		운전	운 전	7	곡성 1, 구례 1, 화순 1, 완도 2, 구례의회 1, 보성의회 1	
			운 전 (건설기계 조종면허)	4	목포 2, 순천 2	
			운 전 (보훈청추천)	19	전라남도 2, 목포 2, 순천 1, 광양 2, 곡성 1, 구례 2, 고흥 1, 보성 1, 해남 1, 영암 1, 무안 1, 완도 2, 진도 2	

라.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 10. 28.(토)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b>계</b>			<b>14개</b>	<b>82명</b>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	일반행정	19	<b>도 일괄 19</b> (전라남도 3, 목포 2, 순천 1, 나주 3, 장흥 1, 강진 1, 해남 2, 영암 1, 함평 1, 장성 1, 완도 1, 영광의회 2)	
			법무행정	2	여수 2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업	일반기계 (무대기계)	3	목포 1, 순천 1, 고흥 1	
			일반기계 (고 출)	4	목포 1, 여수 1, 광양 1, 해남 1	
			일반전기 (무대조명)	2	목포 1, 나주 1	
			일반전기 (고 출)	2	광양 1, 영암 1	
		농업	일반농업 (고 출)	5	전라남도 2, 나주 2, 담양 1	
			해양수산 (고 출)	4	목포 1, 해남 1, 완도 2	
		보건	보 건 (고 출)	2	목포 1, 구례 1	
		시설	일반토목 (고 출)	9	여수 2, 고흥 1, 화순 1, 장성 3, 진도 2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2	곡성 2
				농업환경	1	해남 1
				농식품개발	1	영광 1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22	<b>도 일괄 22</b> (나주 4, 곡성 1, 구례 1, 고흥 2, 보성 1, 장흥 1, 강진 1, 해남 1, 영광 1, 완도 2, 진도 7)
				원 예	2	보성 1, 영광 1
농업기계	2			장흥 2		

마. 제5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11. 18.(토)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b>6개</b>	<b>12명</b>	
제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3	여수 1, 나주 1, 장흥 1
			미 술	1	여수 1
		기록연구	기록관리	1	고흥 1
		수 의 연구	수 의	5	전라남도 5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1	여수 1
		녹지연구	임 업	1	전라남도 1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 시·군의회)별로 모집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전라남도’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남도청 또는 전남도청 소속 직속기관·사업소 중에서 근무하며,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청 및 소속기관 중에서 근무합니다.(시·군의회는 시·군의회에서 근무함)

2 시험 과 목

가.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제2회 임 용 시험	8급	간호	간 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9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저소득) 일반행정(장애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제2회 임용 시험	9급	세무	지방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지방세 (장애인)	
		사회 복지	사회복지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저소득)	
			사회복지 (장애인)	
		전산	전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 (장애인)	
		사서	사서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서 (장애인)	
		속기	속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업	일반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원자력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핵공학개론, 보건물리학개론
			일반화공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일반농업 (장애인)	
			축산	
		녹지	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해양 수산	일반수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일반해양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보건	보건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 (장애인)	
		식품 위생	식품위생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	일반환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도시계획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제2회 임용 시험	9급	시설	건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디자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방재 안전	방재안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 통신	통신기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 폐지에 따라 조정점수제 폐지

나.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수과목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제3회 임용 시험	9급	녹지	조경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해양 수산	선박항해
		선박기관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보건	보건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의료 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사)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환경	수질 (정수시설)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대기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지구과학
		운전	운전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운전 (보훈청추천)	

**다.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는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제4회 임용 시험	7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4)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법무행정	필수(5)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b>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b>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9급	공업	일반기계(무대기계)	필수(3) 물리, 기계일반, <b>기계설계</b>
			일반기계(고졸)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무대조명)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고졸)	
		농업	일반농업(고졸)	필수(3) 생물, 재배, <b>농업생산환경</b>
		해양수산	일반수산(고졸)	필수(3) <b>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b>
		보건	보건(고졸)	필수(3) 생물, <b>환경보건, 공중보건</b>
	시설	일반토목(고졸)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2015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	
	연구사	농업연구	작물	필수(2) <b>재배학, 실험통계학</b> 선택(1) <b>작물생리학</b>
			농업환경	필수(2) <b>토양학, 농업환경화학</b> 선택(1) <b>실험통계학</b>
			농식품개발	필수(2) <b>식품학, 실험통계학</b> 선택(1) <b>식품가공학</b>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필수(2) <b>재배학, 작물생리학</b> 선택(1) <b>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선택</b>
			원예	필수(2) <b>재배학, 원예학</b> 선택(1) <b>농촌지도론</b>
			농업기계	필수(2) <b>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b> 선택(1) <b>농촌지도론</b>

※ 9급 고졸 경력경쟁 임용 시험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라. 제5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수과목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제5회 임용 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박물관학
			미술	필수(2)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한국미술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필수(5)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문헌정보학
		수의연구	수의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필수(2)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수산생물학
		녹지연구	임업	필수(2)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임목육종학

**3 필기시험 시간**

시험명	직급(직렬)	과목수	시험시간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급·9급	5과목 10:00~11:40(100분)
제3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9급	3과목 10:00~11:00(60분)
		9급(운전)	2과목 10:00~10:40(40분)
제4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7급	5과목 10:00~11:40(100분)
	경력경쟁	9급·연구사·지도사	3과목 10:00~11:00(60분)
제5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연구사(기록연구)	6과목 10:00~12:00(120분)
		연구사(학예, 수의, 해양수산, 녹지)	3과목 10:00~11:00(60분)

##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2회 임용시험	38개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보건행정,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4회 임용시험	16개	(7급)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고졸)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재배, 토목일반, 측량(2015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 ※ 9급 고졸 경력경쟁 임용 시험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 1, 생물은 생명과학 1,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나. 호남권(전남·전북·광주)에서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제2회 임용시험	6개	가축사양, 가축육종, 수산일반, 수산경영,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제4회 임용시험	6개	(연구사·지도사)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학(고졸) 환경보건, 공중보건

다. 위 가항과 나항 이외의 과목은 도에서 자체 출제(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5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시험명	결정방법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6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써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⑤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나. 응시연령

1) 7급·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2) 8·9급: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제4회 임용시험 9급/고졸 분야는 2024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2006. 12. 31.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다.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제외

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응시자

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연구사·지도사 응시자는 위 2의 지역모집 군(郡)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 1의 거주지 요건 충족 시 모든 시·군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 수의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응시 가능합니다.(별첨 4 참조)

구분	거주지 제한
전남지역 내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전남지역 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위 1,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2의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 군(郡) : 완도, 진도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4)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제출 안내합니다.
- 5)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별첨 2)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권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 내용(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 제2회 임용시험: 2023. 3. 13.(월) ~ 3. 20.(월)
- 제4회 임용시험: 2023. 7. 17.(월) ~ 7. 24.(월)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단, 자격이 혼합된 경우도 기간이 연속되면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 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급(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수급(비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 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우선으로 신청해야 함.

**사.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희망자는 해당 지방보훈(지)청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라도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 응시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 학력 등) \* 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사 항
8급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 3급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사 항
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3급
	시 설	지 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2)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사 항
9급	녹 지	조 경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항해사 1급 ~ 6급
		선박기관	기관사 1급 ~ 6급
	보 건	보 건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사)	방사선사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1급 ~ 2급
	환 경	수 질 (정수시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3급
		대 기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운 전	운 전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 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운 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제1종 대형면허(군면허 제외) 소지자로서, 굴착기(굴삭기) 조종사면허 소지자[3톤 미만의 굴착기(굴삭기) 면허 제외]
운 전 (보훈청추천)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한 사람	

3) 제4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직급	직렬	직류	제한사항	
9급	공업	일반기계(무대기계)	무대기계전문인 1급 ~ 3급	
		일반기계(고졸)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일반전기(무대조명)	무대조명전문인 1급 ~ 3급	
		일반전기(고졸)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일반농업(고졸)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양수산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	보건(고졸)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 학과[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 학과[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연구사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식물학, 한약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또는 식품저장학을 전공한 사람	

직급	직렬	직류	제한사항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전공한 사람”은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중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제5회 임용시험(경력경쟁)

직급	직렬	직류	제한사항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또는 문화유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학에서(1급 ~ 3급) 또는 준학에서 자격 소지자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li> <li>2)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li> <li>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5.23.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li> </ul>		
			수의연구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임업경제학 또는 임업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전공한 사람”은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함. (학예연구, 기록연구, 수의연구 제외)

6) 응시자격 요건 설명

- 가) 자격·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연구사** 각 직렬(직류)의 제한 사항 중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포함합니다.  
 - 대학교에서 비전공인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인 사람)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 **연구사의 경우 “관련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첨1 참조)**로 인정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는 동일학과 증명서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증명서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학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함)  
 ※ **공고문의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고졸자 별도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각급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자로서 출신(재학)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 중 응시희망자는 **2023. 5. 26.(금)까지 출신학교로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라도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2023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각급 대학에 재학(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으며, **고졸자 별도전형과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운전직렬(**보훈청추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제외**) 응시 자격요건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등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차종의 해당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18】 기준에 따름  
 - 군 복무기간 중의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졸업)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임용시험	2023. 3. 13.(월) ~ 3. 17.(금)	인터넷 접 수	필기시험	5.31.(수)	<b>6.10.(토)</b>	7. 4.(화)
			면접시험	7. 4.(화)	7.25.(화) ~ 8. 7.(월)	8.25.(금)
제3회 임용시험	2023. 5. 15.(월) ~ 5. 19.(금)		필기시험	8. 9.(수)	<b>8.19.(토)</b>	9. 5.(화)
			면접시험	9. 5.(화)	9.21.(목)	10. 5.(목)
제4회 임용시험	2023. 7. 17.(월) ~ 7. 21.(금)		필기시험	10.18.(수)	<b>10.28.(토)</b>	11.17.(금)
			면접시험	11.17.(금)	11.29.(수) ~11.30.(목)	12. 8.(금)
제5회 임용시험	2023. 8. 28.(월) ~ 9. 1.(금)	필기시험	11. 8.(수)	<b>11.18.(토)</b>	12. 1.(금)	
		면접시험	12. 1.(금)	12.14.(목)	12.22.(금)	

-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적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에 반영됨)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 및 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 험 명	응 시 원 서		접수·취소시간
	접 수 기 간	취 소 기 간	
제2회 임용시험	2023.3.13.(월) ~ 3.17.(금)	2023.3.13.(월) ~ 3.20.(월)	<b>24시간 운영</b> 접 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취 소: 시작일 09:00 ~ 마감일 24:00
제3회 임용시험	2023.5.15.(월) ~ 5.19.(금)	2023.5.15.(월) ~ 5.22.(월)	
제4회 임용시험	2023.7.17.(월) ~ 7.21.(금)	2023.7.17.(월) ~ 7.24.(월)	
제5회 임용시험	2023.8.28.(월) ~ 9. 1.(금)	2023.8.28.(월) ~ 9. 4.(월)	

※ 응시원서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 3) 응시수수료: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동일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2회 임용시험(6.10.):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4회 임용시험(10.28.): 7급 등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 단, 사·도별 별도로 시행하는 경제 시험은 제외함.
- 2) 또한, **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3)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단, **가산점 등록**은 해당시험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4)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이어야 하며, 향후 서류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5)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6)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시 확인합니다.
- 7) ‘**도 일괄 모집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 선택이 없으며, **필기시험 응시희망 지역(목포 또는 순천)만 선택**합니다. 단, 시험장 사정에 따라 응시희망지역 이외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8) **운전(보훈청추천) 분야**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추천, **9급/고졸 경력경쟁 분야**는 졸업(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9)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음)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10) 장애인·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별첨2] ‘장애인 등(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제4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18.5.12. 전 시험)	(*18.5.12. 이후 시험)		
일반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청각장애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5>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2018.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2018.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3)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익, 텡스, 지텔프: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이 아님
- 4)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사·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 1)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제4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5년 이내(2018. 1. 1. 이후) 성적' 부분 삭제
- 2) 국사편찬위원회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수험생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2)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11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대상: 임용예정기관의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다. 채용목표: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적용대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단위

나. 적용방법: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 가 산 특 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적용 가산점) [별첨 3] 참고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바'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포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4명 이상인 경우)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10명 이상인 경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연구사·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따름(별첨 3 참조)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모든 임용시험의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

※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통산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공통 적용 가산점 특전 폐지)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및 거주지 제한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기간) 최종일을 의미**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호남권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 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합격 유효기간(공개경쟁 2년, 경력경쟁 1년)내에 임용**되며, **임용시기는 합격 유효기간 내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전출(전보) 제한기간	임 용 예 정 기 관
5년	광양, 구례,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해당 시·군의회 포함)
3년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해당 시·군의회 포함)

- 단, 자격증·학력·면허증 등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 15 기타 사항

가.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나.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중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삭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5년 이내(2018. 1. 1. 이후) 성적’ 부분 삭제**되어 필기 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이면 인정됨

### 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학과 변경**
  -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합니다.
- 가산자격증 등록일 변경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 **필기시험일 포함 3일 이내**
  - 가산점 등록(수정)은 해당시험 원서접수일 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전국 통일
- 연구사(농업연구 제외) 시험 일정의 변경 : **11월 중 ⇒ 3~4월 중**
  - 연구사 필기 시험일이 **매년 하반기(11월)에서 상반기(3~4월)로 변경**
- 7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 **20세 ⇒ 18세**
- 전산직렬(직류-전산,데이터)의 신규 임용시험 시 **특수직급에서 제외**
  - 전산직렬 공채 시험의 경우 특수직급으로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였으나 **해당 자격증 없이 공채 시험 응시 가능**

라.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시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061-286-3371~6)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질의응답」 코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 <별첨 1> 관련 계통학과 증명서 서식
- <별첨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별첨 3>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면허 안내
- <별첨 4> 2023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
- <별첨 5>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별첨 6>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 제도 안내